

- 2024년 8월 중 -

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추진목표

- ◇ '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'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, 투명·공정한 행정 구현

1 육·해상 지도·점검 계획

□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

- 외국 EEZ*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(서남구저인망·통발·자망 등)에 대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EEZ 침범 조업 위험 사전차단

* 한·일 중간수역(89,91,358해구), 남해 EEZ(100,106해구)

- (어장형성) 7월 이후 남해 EEZ(106해구)인근 '눈불대' 어장 형성으로 서남구저인망·자망어선 등 외국 EEZ 침범어선 다수 발생 중

* 고의 침범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은 강력 지도·단속 실시

- (항해장비) ①GPS 위치오차 등을 고려하여 EEZ 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, ②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사용 금지

- 한·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 등을 위해 EEZ 횡단어선 증가추세,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, 지도선 간 통신채널 구축하여 日지도선에 나포 방지

□ 멸치조업 재개에 따른 불법어업 지도·단속 강화

- 기선권현망, 연안선망 등 멸치 조업 재개(7.1~)에 따라 금지구역 침범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
- (금지구역) 기선권현망 멸치포획 금지구역(거제~부산 연안), 및 멸치 포획목적 연안선망 어망사용 금지구역(진해만 내측) 준수 여부

- (어구어법) 변형어구 사용, 불법 예망(인망) 조업(선망 한정) 등

□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전주기 어구관리제도 지도·점검

- (어구실명제) 대상업종*의 경우 어구 설치 시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의 성명, 연락처 등의 정보**를 어구에 표시

* 연안개량안강망·근해안강망·실뱀장어안강망, 연·근해 자망 및 통발어업

** ①소유자의 성명·연락처 ②어선 명칭·어선번호 ③사용되는 어구의 일련번호

- (생산·판매 신고제) 어구·기자재의 생산·판매·수입업자는 관할 지자체 신고, 생산·판매한 어구의 종류·구매·수량 등의 기록을 3년 간 보존

* (대상자) 선구점을 포함한 생산·판매·수입업자 전부

- (어구보증금제) 선구점·어업인에 통발어구 판매 시 보증금액 포함 판매, 표식 부착, 판매정보 제공 등 어구 생산·판매업자의 의무 준수

* (대상자) 통발어구 생산·수입·판매업자(일반 선구점 제외)

□ 휴가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·판매 제한

- (장비기준) 수산자원 포획·채취하려는 경우 투망, 통발 등 사용 가능한 어구 준수, 수경·잠수복 등 장비 기준 준수 여부(붙임 2참조)

- (금지기간 등)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·체중 등 준수 여부

* 갈치(7.1~7.31), 말쥐치(5.1~7.31), 전어(5.1~7.15), 꽃게(6.21~8.20) 등

□ '24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 지도·단속 실시

- (기간대상) '24. 7. 15. ~ 8. 15. / 전국 내수면어선 및 유어객

- (점검내용) 무허가·무신고 어로행위, 배터리 사용 유해어법, 금지 체장·기간 위반,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강력 지도·점검

- (무허가 등) 정치망(면허), 자망·연승·낭장망(허가), 투망·통발·어살(신고) 등 면허·허가를 받지 않거나, 신고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

- (유해어업) 폭발물, 유독물, 전류(배터리) 등을 사용하여 내수면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

- (유어질서) 낚시 등 내수면 유어행위 시 동력 보트, 잠수용 스쿠버 장비, 투망·작살류, 다른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사용 여부

* 동력보트, 잠수용 스쿠버장비, 투망, 작살류,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치

2 어선법

□ 장거리 위치발신장치(D-MF/HF)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·단속

- (상시작동) D-MF/HF 의무설치기한 도래*(~3.31.)에 따라 장비 미설치·미작동** 행위 중점 지도·점검, 미작동 정환 발견 즉시 단속

* (설치대상) 기선권현망·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

** (미설치)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(미작동)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,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

- (고장신고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,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

*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·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(해상-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)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

□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

- (기간대상) '24. 6. 17. ~ 8. 16. / 연근해어선(낚시어선 포함)

- (공통사항) ①어선설비 구비여부, ②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, ③어구 과적, 불법 증·개축 점검, ④통신장비 조난버튼(SOS) 사용 안내, ⑤구명조끼 상시착용, ⑥운항 시 상시경계 강화 홍보 등

* (참여기관) 해양수산부, 동해어업관리단, 해경, 지자체, KOMSA, 수협 등

- (연근해어선) 구명장비 비치 여부, 승선정원 준수, 물품과적 금지, 전열기 등 화재예방 통신장비 점검, 조업 안전규정 준수 등

- (낚시어선) 안전설비 구비상태, 출항 전 안전점검 및 승객 비상대응 요령 안내, 승선자명부 작성 등 탑승자 안전관리 여부 점검

* 구명조끼·부환 등 승객 구명장비 비치,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 여부 등

-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, 업종별 D-MF/HF 의무설치 사항 지도 및 복원성 확보를 위한 불법 증·개축 예방 지도

3

어선안전조업법

□ 주요 내용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
 - * 특정해역·조업자제해역 출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, 선박에 비치
 - 특히, 승선원 변동사항(인원 변경·추가 등) 반드시 신고(관할 해경과출소)
- 기상특보(태풍·풍랑·폭풍)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,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, 구명조끼 착용의무 착용
 - 1일 1~3회 위치보고+풍랑특보(매 12시간), 태풍특보 시 추가 위치보고(매 4시간)

4

면세유

□ 면세유류 사후관리 점검계획

- (지역대상) 강원 / 관리기관, 선박 등 공급대상 사용자
- (점검사항) 면세유류 배정 시 공급요건* 충족 여부, 허가말소·행정처분 기간 중 공급내역 확인, 어업 외 용도로 면세유 사용 여부 등
 - * (공급요건) 연간 조업일수 60일 ↑ 또는 수산물 판매실적 120만 ↑
 - 면세유류 출고 관련 서류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, 선박·시설 등의 실제 사용 여부, 엔진 등 주요 기기 변동신고 현황 등 중점 점검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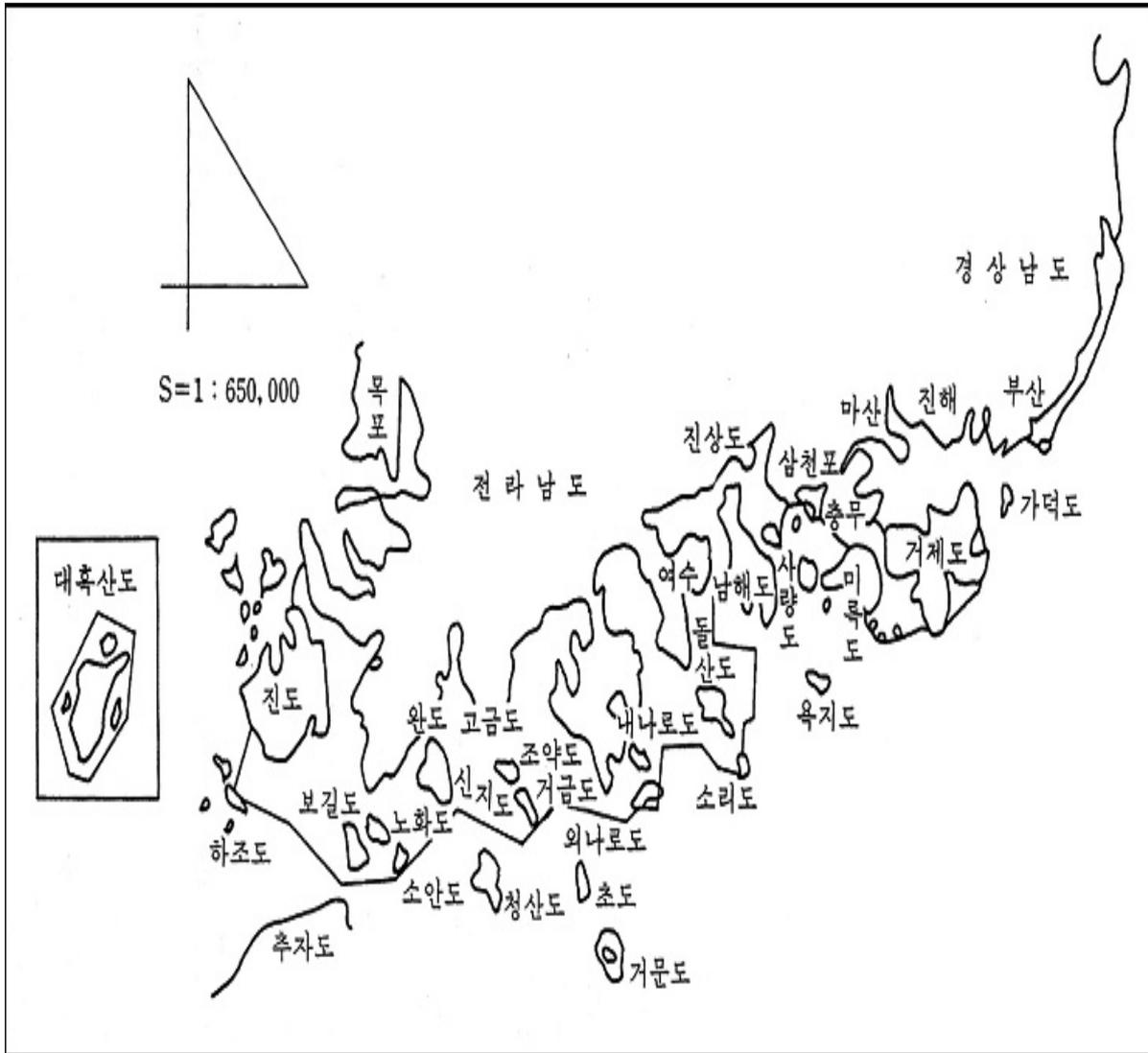
수산관계법령 주요 제·개정 사항

□ 어선검사증서 등 전자적 형태 발급 실시

- (주요내용) 종이 형태로 발급·관리·사용하던 각종 어선검사증서*를 '24년 6월 21일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사용·관리 가능
 - * 어선검사증서, 어선특별검사증서, 임시항행검사증서, 건조검사증서, 예비검사증서, 별도건조검사증서, 검정증서, 건조(제조·정비)확인증, 제한하중 등 확인증 총 9종
 - 해양교통안전공단의 '전자정보시스템'을 통해 전자문서 내려받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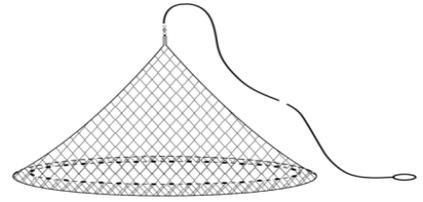
[부도 1]

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



1. 투망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)

가. 투망의 형태: 원뿔형태의 그물로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이줄이 있고,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는 형태이며, 투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나. 사용방법: 그물이 넓게 퍼지도록 물에 던진 다음 손잡이줄을 서서히 당겨 추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물이 오므라들도록 하여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그물의 아래 둘레는 2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2. 뜰채(쪽지), 반두(쪽대), 손들망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)

가. 뜰채(쪽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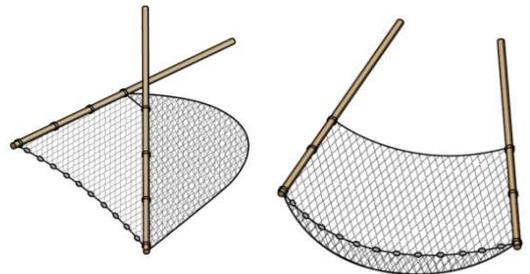
1) 뜰채(쪽지)의 형태: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,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이며, 뜰채(쪽지)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2) 사용방법: 손잡이를 잡고 조작하여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. 이 경우 테의 가장 긴 변의 길이(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)는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나. 반두(쪽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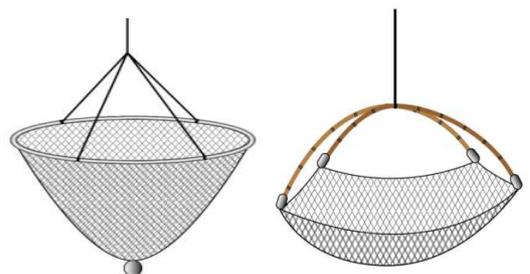
1) 반두(쪽대)의 형태: 사각형태 그물의 아랫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, 양쪽 가장자리에는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형태이며, 반두(쪽대)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2) 사용방법: 손잡이를 잡고 그물을 펼친 후 대상물이 펼쳐진 그물 위로 가도록 하여 재빨리 들어 올려서 잡는다.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다. 손들망

1) 손들망의 형태: 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, 위쪽에는 목줄과 돋움줄(당김줄)을 단 형태로, 손들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점검대상	점검내용	제재사항
관리기관	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20
어업인	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,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·양도 또는 사망·이어(離漁)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,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	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(자동차, 가정용 보일러,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)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※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,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	
	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<p>◆ 그 외,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◆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업 등에 대한 제한(취소, 감척 등)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→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- 「수산업법」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→ 과징금(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)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	
석유판매업자	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 신청	감면세액 추징
	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·공제세액 신청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※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,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(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)		